

의안번호	2214795
의 퇴 인	김병주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계번호	25D6531
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한국법 교육진흥원)	법교육 지원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, 국가는 진흥 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보조함	의무규정
2	안 제10조(법교육 전문가 협의회)	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연구·지원하 고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교육을 하는 자 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 된 단체를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로 지정할 수 있고, 국가 는 협의회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3조(법의 날 및 법교육 주 간)	국가는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, 법의 날이 포 함된 주를 법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, 학술대회 등 사업 을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/재량 규정
4	안 제18조(평생교 육으로서의 법교 육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삶의 전 주기에 걸쳐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－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－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에 법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 －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 교육 등 각종 사회 교육 과 연계한 법교육 실시 － 기업, 단체 등의 교육과정에 법교육이 포함되도록 권장 및 지원	의무규정
5	안 제19조(공무원 에 대한 법교육)	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헌법 원리와 가치, 인권 보 호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포함하여야 하고, 재 직 중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치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20조(군인 등에 대한 법교육)	국방부장관은 군인, 군무원, 사회복무요원,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헌법의 원리와 가치,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21조(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법 교육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찰공무원, 경찰공무원, 교정 공무원, 출입국관리 공무원, 세무공무원 등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원리와 가 치, 인권 보호, 적법절차 및 권한 행사의 한계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8	안 제22조(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·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 - 「국적법」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른 재한외국인 -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	의무규정
9	안 제23조(장애인 등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법교육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(한국법교육진흥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조(법교육 전문가 협의회)	
3	안 제13조(법의 날 및 법교육 주간)	
4	안 제18조(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)	
5	안 제19조(공무원에 대한 법교육)	
6	안 제20조(군인 등에 대한 법교육)	
7	안 제21조(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)	
8	안 제22조(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)	
9	안 제23조(장애인 등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법교육)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(제3조), 법교육위원회(제4조), 법교육 연구 개발(제6조), 학교 법교육의 지원(제7조),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(제8조), 평생교육을 포함한 사회 법교육의 지원(제9조)를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이 규정하는 한국법교육진흥원 설립(안 제8조),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(안 제10조), 법교육 주간(안 제13조), 공무원(안 제19조)·군인(안 제20조)·법집행 공무원(안 제21조)에 대한 법교육,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(안 제22조)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법교육(안 제23조)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한국법교육진흥원 설립,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 설치 및 법교육 대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교육 실시 방법 및 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확대 시행되는 법교육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(교과과정 포함, 사이버교육 이수, 강사 초빙 등)과 시행 횟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현재 법무부의 법교육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법무부 「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」 예산 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예산
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(1636-304)	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	4,783
	솔로몬파크 운영	768
	사업지원경비	127

자료: 법무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